

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-39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. . .

제출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일부개정(2009.05.28. 법률제9751호)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중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고,
-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(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) 위원 구성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중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기능 삭제 (안 제2조제1항제6호)
- 나.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구성 수 상향 조정 (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4항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3조제4항 중 “10인 이상 20인 이하”를 각각 “10인 이상 30인 이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주민생활지원실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주민생활지원실 장 홍 현 구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서비스연계담당 이 영 희
	담 당 자 성명 · 전화	백 미 진 031-860-2362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건의 · 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<u>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</u></p>	<p>제2조(기능)① ----- ----- ----- ---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 삭제 ></p>
<p>제3조(구성)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0인 이상 20인 이하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0인 이상 20인 이하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⑤~⑧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①----- ----- <u>10인 이상 30인 이하</u> -----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10인 이상 30인 이하</u>----- -----.</p> <p>⑤~⑧ (현행과 같음)</p>